

광주광역시서구행정구역(법정동) 경계변경 의견요청

1. 제안이유

-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인구유입 등 생활권의 변동과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걸쳐있는 불합리한 경계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법정동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법정동간 경계변경 대상 : 599필지 273,430㎡
 - 광천동에서 내방동 : 56필지 56,417㎡
 - 화정동에서 내방동 : 8필지 630㎡
 - 화정동에서 광천동 : 14필지 68,187㎡
 - 화정동에서 농성동 : 202필지 83,225㎡
 - 화정동에서 쌍촌동 : 4필지 11,815㎡
 - 내방동에서 광천동 : 312필지 52,422㎡
 - 풍암동에서 화정동 : 3필지 734㎡

3.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인구유입 등 생활권의 변동과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걸쳐있는 불합리한 경계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법정동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은 법률로 정하되, 다만 시·군·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구역변경을 할 때에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2항). 또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제4조 제3항), 본 건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령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규칙」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서(제11조) 본 건 의견요청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내부에 설정하여 놓은 지역적 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역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구역을 설정하려면 자연적·지리적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행정기능을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확정해야 하고, 주민의 행정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민주성의 요구를 또한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구역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와는 변화된 구역 확정기준에 맞추어 또한 그 개편이 필요하게 되는 것도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근래에 계속적인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의 추진에 따라 국토의 자연적·지리적 조건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생활권이 크게 변화하였고, 교통통신의 발달 및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도시권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괴리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생활권과 유리된 행정구역은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불편 등 여러 면에서 장해를 초래하므로, 행정기능의 충실화와 강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와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본 건의 행정구역 경계변경 계획과 같이 행정구역을 적절히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